

강동문화복지회관 BTL 투자사업 계획 동의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 : 2007. 3.

제 출 자 : 구미시장

□ 제안이유

- 강동지역 인구의 폭발적인 증가에 따라 문화복지 욕구가 증폭되나 구미중심 문화지역과의 원거리로 인하여 지역민이 만족할 수 있는 문화공간 제공이 요구됨
- 2006년 8월 인동지역 주민들이 “인동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통하여 21,352명의 서명을 받아 구미시에 건립을 요구하는 등 인동 지역민들의 오랜 숙원사업 임
- 구미시에서는 문화의 수급 양극화를 해소하고 경기 진작과 일자리 창출, 사회 기반시설을 위한 공공재원 부족문제를 해결하고 지속적으로 문화 복지시설을 확충할 수 있으며 민·관 협력의 효율성을 유도하며 10%의 국고보조금을 인센티브로 지원받을 수 있는 BTL 사업으로 신청하고자 함
- BTL사업은 민간투자법에 의한 특수한 행위로 민간 투자자와의 협약 내용이 금전적채무가 아닌 의무부담행위로(2005. 8. 9 행정자치부 재정정책팀-2494) 지방자치법 제35조1항제8조에 의거 동의안을 제출함

□ 주요내용

- 위 치 : 구미시 인동지역 일원
- 사업기간 : 2007 ~ 2010(4년간)
- 사업규모 : 부지52,900m²(16,000평)정도
- 기본시설 : 대공연장, 각종 전시실, 강의실, 야외공연장, 여성플라자, 연습실, 어린이 보육시설 등
- 사 업 비 : 350억원 (국비20 도비 15, 시비 315)

□ 추진방법

- 법적근거 :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7조의 2항
- 추진개요
 - 민간이 자금을 투자하여 시설 **건설(Build)**후 국가 · 지자체로 소유권을 **이전(Transfer)**하고 국가 · 지자체에게 시설을 **임대(Lease)**하여 투자비를 회수
 - 민간사업자는 민간투자법 제26조에 근거, 시설의 **관리운영권**(유지 · 보수) 획득
 - 민간사업자가 관리운영권 행사방법으로 약정한 기간동안 주무관청에 시설을 임대하고 약정된 임대료 수입으로 투자비를 회수
 - 시설임대기간 : 10~30년(평균 20년)
 - 민간에서 가능한 분야를 민간에게 위임하고 관여를 최소화하는 작은정부 지향의 정책이며 민간과 지자체가 동시에 이익을 얻는 Win-Win 시책임
 - 우선협상자 선정후 가격 협상과 설립에 따른 기본 계획이 수립된 후 협상(안) 또한 동의절차를 이행할 예정임

□ 인근 시군 추진현황

시 군 명	건립내용	예산	규 모	비 고
대구광역시	대구시립미술관	670억	부지 71,065m ² 연면적 20,806m ² 지하1층 / 지상 3층	
안 동 시	문화예술회관	500억	부지 16,030m ² 연면적 52,940m ² 지하 2층 / 지상 3층	
경 주 시	문화예술회관	700억	부지 28,100m ² 연면적 20,000m ² 지하 2층 / 지상 5층	

□ 향후 추진계획

- 2007. 4월 : BTL사업 신청(문화관광부→기획예산처)
- 2007. 4월 : 토지소유자 매각동의 징구
- 2007. 5월 : 공유재산 심의 결정
- 2007. 6월 : BTL사업 예비선정(기획예산처)
- 2007. 7월 : 건립추진위원회 및 TF팀 구성
- 2007. 7월 : 건립예정부지 도시계획변경, 환경영향평가
- 2007. 7월 : 사업기본계획수립 용역(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 2007. 8월 :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심의의결(문화관광부)
- 2007. 9월 : BTL사업 기본계획 고시(모집공고)
- 2007.11월 : 사업설명회(현장설명회 - BTL사업희망 민간업체)
- 2007.12월 : 1단계 자격평가(희망업체)
- 2008. 2월 : 2단계 기술, 자격평가
- 2008. 3월 : 우선 협상대상자 선정
- 2008. 4월 : 설계업체 선정
- 2008. 5월 : 협상단 구성(추진위원단 + 우선협상자)
- 2008. 5월 : 실무협의회 개최
- 2008. 6~7: 우수건축물 벤치마킹
- 2008. 7~8: 실무협상(7~8회 기술협상)
- 2008. 9월 : 가격협상
- 2008.10월 : 협상완료 및 의회 동의
- 2008.12월 : 실시설계서 작성
- 2009. 1월 : 착공

강동문화복지회관 BTL 투자사업 계획 동의안

강동문화복지회관을 신축함에 있어 민간투자방식(BTL방식)으로 건립할 것을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8조에 규정에 의거 의결한다

□ 강동문화복지회관 건립 현황

- 위 치 : 구미시 인동지역 일원
- 사업기간 : 2007 ~ 2010(4년간)
- 사업규모 : 부지52,900m²(16,000평)정도
- 기본시설 : 대공연장, 각종 전시실, 강의실, 야외공연장, 여성플라자, 연습실, 어린이 보육시설등
- 건립방식 : BTL 방식
- 구체적 시설과 건립예산은 기본계획 수립시 반영한다.

참 고 자 료

□ 지방자치법 제35조 1항 제8조

제35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 지방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개정 1994·3·16, 1999.8.31>

1. 조례의 제정 및 개폐
 2. 예산의 심의·확정
 3. 결산의 승인
 4.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수수료·분담금·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5. 기금의 설치·운용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재산의 취득·처분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처분
 8.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외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9. 청원의 수리와 처리
 10.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11. 기타 법령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사항외에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7조의 2항

제7조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의 수립)

- ① 정부는 국토의 균형개발과 산업의 경쟁력강화 및 국민생활의 편익증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공고(인터넷에 게재하는 방식에 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공고한 사항이 변경된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2005.1.27>
- ② 제1항의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은 사회기반시설과 관련된 중·장기계획 및 국가투자사업의 우선순위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하며, 민간의 창의와 효율이 발휘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면서 공공성이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③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의 수립·변경 및 확정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6조

제26조 (사회기반시설의 관리운영권<개정 2005.1.27>)

- ① 주무관청은 제4조제1호 또는 제2호에 규정한 방식에 의하여 사회기반시설사업을 시행한 사업시행자가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는 기간동안 동 시설을 유지·관리하고 시설사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사회기반시설관리운영권(이하 "관리운영권"이라 한다)을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설정할 수 있다. <개정 2005.1.27>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관리운영권을 설정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운영권을 등록한 사업시행자는 당해 시설의 적절한 유지·관리에 관하여 책임을 진다.
-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지·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자치단체 BTL사업 추진방법 안내 공문

(2005.8.9 행정자치부 재정정책팀-2494)

1. 올해 처음으로 도입된 BTL 방식에 의한 민간투자사업과 관련 BTL사업의 협약체결을 지방재정법 제35조에 따른 채무부담행위로 간주하여 지방의회 의결을 받도록 안내한바 있습니다.
2. 그 이후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등 관계부처의 협의결과, BTL사업의 협약체결은 민간투자법에 의한 특수한 행위로서 협약내용도 통상의 금전적인 채무와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지방재정법 제35조에 따른 채무부담행위가 아닌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의무부담행위로 보아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는 것으로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리니 BTL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방재정법 제35조

제35조 (채무부담행위)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채무부담의 원인이 될 계약의 체결 기타의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예산으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1.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것
 2. 세출예산·명시이월비 또는 계속비 총액의 범위안의 것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부담이 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상환연도 세출예산에 반드시 계상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의 채무부담행위의 경우에는 당해연도와 다음 연도에 걸쳐 지출하여야 할 지출원인행위를 할 수 있다.